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3년 5월 25일 의 제	제50회 - 1호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원안의결

제안부서 감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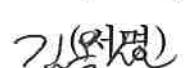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국민권익위원회예규 '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' 내 표준안 내용을 규정 내 반영하고자 함.

주 문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3년 5월 25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3년 5월 25일 의 제	제50회 - 2호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폐지(안)	
구 분	의결사항	원안의결

제안부서 홍보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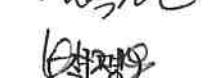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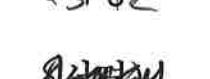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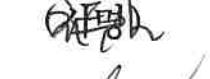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규정(사규) 폐지 후 기준(사규 외 내부규칙)으로 제정하고자 함

주 문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폐지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3년 5월 25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3년 5월 25일 의 제	제50회 - 3호 여비규정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수정의결

제안부서 인사노무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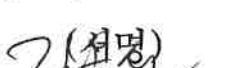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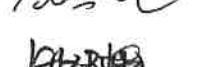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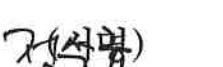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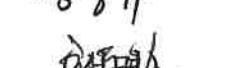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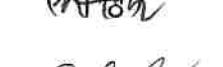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준용하여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.

주 문 여비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.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3년 5월 25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(서명)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3년 5월 일 의 제	제50회 - 4호 재해보상규정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수정의결

제안부서 인사노무부

제안사유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민사피고,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규정 내 반영하고자 함.

주 문 재해보상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.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3년 5월 25일

위 원 장	이 기 완	(서명)
부위원장	차 태 교	(서명)
위 원	김 옥 선	(서명)
위 원	박 지 은	(서명)
위 원	이 경 택	(서명)
위 원	정 승 규	(서명)
위 원	최 두 일	(서명)
위 원	유 호 연	(서명)
위 원	정 혼 택	(서명)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3년 5월 25일 의 제	제50회 - 5호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(안)
구 분	의결사항

제안부서 법무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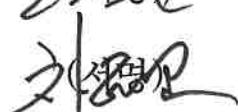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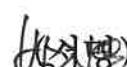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공사가 피소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한 소송의 범위를 재정의하고, 공사임직원 소송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규정 내 반영하고자 함

주 문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.

제50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3년 5월 25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(서명)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